학적처리에 관한 규정

제정 2024. 06. 17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에서 정하지 못한 학적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적변동의 전반에 적용하며, 상위법 및 특별한 규정 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사항은 본 규정에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2장 편입학

- 제3조(편입학의 정의) 타 대학에 재적하였거나 재적하고 있는 자를 당해 학칙에 따라 편입학 전형을 거쳐 우리 대학의 학적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4조(편입학 자격) ①학칙 제18조(편입학)은 편입 학년 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자격을 가져야 한다.

구 분		지원자격		
2학년 1학기 편입	국내·외 대학 출신	①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② 전문대학에서 1학년(2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학칙 제57조의 2항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적(자퇴포함)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(사이버대학, 산업대 등 포함)에서 1학년(2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학칙 제57조의 2항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①~③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		
	학점은행제 (시간제등록) 학습자	"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" 및 "평생교육법"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 제57조의 2항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인자		
3학년 1학기 편입	국내 · 외 대학 출신	①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② 전문대학에서 2학년(4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학칙 제57조의 2항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적(자퇴포함)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(사이버대학, 산업대 등 포함)에서 2학년(4개 학기) 이상 수료하고 제57조의 2항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①~③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		
	학점은행제 (시간제등록) 학습자	"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" 및 "평생교육법"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 제57조의 2항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인자		
2학기 편입	재외국민 및 외국인	① 재외국민 및 외국민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, 제2호, 제6조, 제7호에 한함) ② 국외 대학의 경우, 국내의 전문대학 혹은 일반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대학교(사이 버대학은 제외)의 수학한자 ③ 2학기 편입의 경우, 편입 기준 하위 학년으로 편입한다. ④ ①,②,③외 기준은 2학년 1학기 편입, 3학년 1학기 편입 기준에 따른다.		

② 편입학 세부 전형기준은 매 학년도(학기)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입학한 경우라도 입학을 취소하고 납부한 등록금(수업료 등)은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및 학칙에 따른다.
- **제5조(편입학의 여석)** ① 제3조에서 정한 편입학은 모집단위(전공) 별로 여석이 있을 경우, 모집단위(전공)별로 허가할 수 있다.
 - ② 편입학 여석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6조(편입학의 등록 및 허가) ① 편입학자의 등록은 재학생에 준한다.
 - ② 편입학의 허가 및 기타 세부 사항은 편입학 당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한다.
- 제7조(편입학 학점인정) ① 편입학 사정시 각 호의 최대학점 기준에 따라 "전공선택" 혹은 "일반선택" 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1. 1학년 2학기 편입 : 인정하지 않음
 - 2. 2학년 1학기 편입 : 학칙 제57조 2항 1학년 수료 학점 이하
 - 3. 3학년 1학기 편입 : 학칙 제57조 2항 2학년 수료 학점 이하
 - 4. 1,2,3호에 포함되지 않는 편입의 학점인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 - ② 편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학적 관련부서에서 학력조회를 진행해야한다. 단, 편입학 허가 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 - ③ 편입학자이 허가된 자는 허가된 학기부터 편입한 모집단위(전공)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 - ④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.

제3장 재입학

- 제8조(재입학의 정의) 대학에 재적하였던 사실이 있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탈락 하였으나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업의 기회를 얻어 다시 수학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9조(재입학의 자격)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.
 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.
 - 1.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
 - 2. 기타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정한 자
- 제10조(재입학의 여석) ① 제8조에서 정한 재입학은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, 제적 당시 모집단위(전공)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재적 당시 모집단위(전공)이 모집 정지된 경우는 학칙에 따른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경우, 재입학 여석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 - 1. 법령에서 정원을 정하는 모집단위(전공)
 - 2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단위(전공)

- 제11조(재입학의 허가 및 등록)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총장이 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.
 - ②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학기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재입학을 최종 허가하며 개강일 이후 3주(21일)이내에 최종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,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 - ③ 재입학 신청자의 등록금(수업료 등) 및 납부방법은 재학생에 준한다.
- 제12조(재입학자의 성적처리) ① 재입학생은 재입학이 허가된 학기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.
 - ② 조기재입학(자퇴 및 제적된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재입학하는 것)학생이 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기재입학 신청시 성적취소 내용도 포함하여 해당 학기 성적일체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4장 전과

제13조(전과의 정의) 입학한 모집단위(전공)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모집단위(전공)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4조(전과의 범위 및 여석)

- ① 전과의 범위는 모든 모집단위(전공)로 할 수 있다. 단 각 호의 경우,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.
 - 1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모집단위(전공)
 - 2. 상위 법령에서 정원을 정하는 모집단위(전공)
 - 3. 모집정지된 모집단위(전공)
- ② 전과의 전입 여석은 학년도 학기별 총장이 정할 수 있으며 스쿨(전공) 및 교육과정의 특성과 수용능력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. 단, 전출 여석은 제한하지 않는다.
- ③ 전과 전입 여석은 모집단위(전공)별 학년별로 정할 수 있으며,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사전 공지한다.

제15조(전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)

- ①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1개 학기 이상을 등록 및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② 전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갖춰진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.
- ③ 전과는 매 학기 시작 전 신청기간을 두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 단, 모집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총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④ 전문학사학위 편입생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은 전과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.
- ⑤ 학제(1년제, 2년제, 3년제 등)가 서로 다른 경우, 전과할 수 없다. 단, 모집정지 등 특별

한 사유가 있는 경우, 학칙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제16조(전과 절차 및 허가) ① 전과 절차는 모집단위(전공)별로 정하며, 정해진 기간 내에 기간 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사전 공지한다.
 - ② 전과 절차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고, 전체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, 단, 스쿨 (전공)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시험 등 별도 절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.
 - ③ 전과 무시험 선발 중 전체 평점평균이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해 선발한다.
 - 1. 백점환산점수가 높은 자
 - 2. 전체 취득학점이 많은 자
 - 3. 전공 취득학점이 많은 자
 - 4. 1,2,3호가 같은 경우, 선발여부는 스쿨에서 정한다.
 - ④ 전과 절차 중 선발 최소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최소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여석과 관계없이 전과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.
 - ⑤ 전과 신청 받은 모집단위(전공)는 정해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(스쿨 원장의 승인)하고 최종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17조(전과 학점인정) ①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 전 취득한 전공학점은 "일반선택"으로 인정한다. 단, 전과 절차 중 전입 모집단위(전공)에서 "전공학점"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②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가 승인된 학기부터 모집단위(전공)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전과 허가자의 등록) 전과가 승인된 자의 등록금(수업료 등)은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및 학칙에 따른다.

제5장 휴학

- 제19조(휴학) ① 병역의무,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학기 수업일수 1/4를 초과하여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휴학 신청하고 지도교수 와 상담해야 한다.
 - ② 휴학은 일반휴학, 군입대휴학, 질병휴학, 임신·출산 및 육아휴학, 기타휴학으로 구분하며, 휴학별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.

구분	기간	필요서류
일반휴학	1년(2학기)이내	휴학계획서 등
군입대휴학	의무복무기간	입영통지서, 복무확인서 등
 질병휴학	1년(2학기)이내	4주이상 진단서 등
임신・출산및육아휴학	자녀당 1년(2학기)이내	가족관계증명서 등
기타휴학	1년(2학기)이내	관련 증빙서류

- ③ 휴학은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단, 각 호의 휴학의 경우, 연속 횟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.
 - 1. 군입대휴학(의무복무에 한함)
 - 2. 질병휴학
 - 3. 임신·출산 및 육아휴학
 - 4. 기타 총장이 횟수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허가한 휴학
- 제20조(휴학자의 등록금 처리) ① 등록한 마친 학생이 수업일수 1/2선 이내에 일반휴학, 질병휴학, 임신·출산 및 육아휴학, 기타휴학 할 경우, 복학학기(조기복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) 의 등록금(수업료 등)을 면제한다. 단, 수업일수 1/2선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 성적 취득 여부 및 등록금 처리방식은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및 학칙에 따른다.
 - ② 등록한 마친 학생이 군입대 휴학할 경우, 군입대 일자가 수업일수 3/4선 이내인 경우, 해당학기 성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, 복학학기(조기복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)의 등록금 (수업료 등)을 면제한다. 단, 군입대 일자가 수업일수 3/4선을 초과하는 경우, 성적 취득 여부 및 등록금 처리방식은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및 학칙에 따른다.
- 제21조(휴학의 제한) ① 각 호에 대상 및 학기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.
 - 1. 신입생의 최초 정규학기
 - 2. 편입생의 최초 정규학기
 - 3. 재입학생의 재입학이 허가된 최초 정규학기
 - 4. 전과 허가 직후 정규학기
 - 5. 조기 복학한 정규학기
 - 6. 졸업유예가 승인된 후 모든 학기
 - 7.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한 학기(최종 완납한 경우는 예외로 함)
 - 8. 기타 총장이 휴학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한 대상이나 학기
 - ② 모집정지된 모집정원(전공)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학년별 전공유지기간 후 휴학 및 휴학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며 휴학기간 종료시점에 반드시 복학하여야한다.
 - ③ 의무 복무를 제외한 군복무(직업 군인 등)인 경우 군입대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으로 처리한다.
- 제22조(휴학의 연장) ① 휴학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휴학의 사유가 계속되는 등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한다.
 - ②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으로 휴학연장한 경우, 기존 일반휴학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제23조(휴학취소) ① 휴학을 신청한자가 휴학사유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업일수 1/4선 이전

- 에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, 해당 스쿨 및 관련부서에 즉시 연락하고 조치받아야 한다.
- ② 군입대 휴학 후 귀향자는 원인발생 1주일 이내에 관련서류(귀향증 등)를 첨부하여 군입 대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. 단, 수업일수 1/4선을 초과한 경우, 일반휴학으로 휴학연장 처리할 수 있다.

제6장 복학

- 제24조(복학) ① 제19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경우, 수 업일수 1/4선 이내 절차를 통해 복학신청해야한다. 조기복학의 경우, 복학 신청 후 지도교수 와 상담해야한다.
 - ② 제19조에 의한 군입대 휴학자 중 제대일자(휴가 등 포함)가 수업일수 1/4선을 경과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서류(전역예정증명서, 잔여휴가 확인서 등)를 수업일수 1/4선 이내에 절차를 통해 복학 신청할 수 있다.
 - ③ 조기복학(기이수한 학년 및 학기의 성적을 갱신하고자 복학예정 학년 학기 이하로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)학생이 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기복학 신청시 성적취소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학기 성적일체를 취소할 수 있다.
 - ④ 모집정지된 모집단위(전공)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학년별 전공유지기간 후 동일한 모집단위(전공)으로 복학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학칙에 따른다.

제7장 자퇴 및 제적

- 제25조(자퇴) 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 하여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지도교수 상담 및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자퇴한 자가 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,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및 학칙에 따른다.
- 제26조(제적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제적 처분할 수 있다.
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 - 2. 휴학기간 만료 후 수업일수 1/4선을 초과하여 복학하지 아니한 자
 - 3. 재학 중 수업일수 1/4선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자
 - 4. 본인 사망
 - 5. 기타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 -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, 납부한 등록금(수업료 등)이 있는 경우,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및 학칙에 따른다.

제8장 학사경고, 진급, 유급

- 제27조(학사경고)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1.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기별 학습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학사경고를 부여한다.
- 제28조(진급 및 유급) ① 이전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위학년에 진급할 수 있으며, 그 대 상자는 진급사정회에서 결정된 자로 한다.
 - ② 동일학년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과 학칙 제57조 2항의 학년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(상위학년으로 진급을 제한)처리한다.
- 제29조(학사경고자 및 유급에 대한 후속조치) ①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(보호자 포함)에게 그 사실을 성적표 등에 표기하여 통보할 수 있다.
 - ② 교무 관련 부서는 학사경고 사실을 스쿨에 통보해야한다.
 - ③ 학사경고 및 유급처리된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년에 따른 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강 신청을 지도해야한다.

제10장 보고

- 제30조(보고) ① 해당 규정에 포함된 학적처리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학적 관련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보고해야 하며,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히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.
 - ③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보고해야한다.
 - 1. 고등교육통계조사 등에 따른 재학생 충원율(04.01일자, 10.01일자)
 - 2. 학기별 복학 현황
 - 3. 학기별 제적 현황
 - 4. 학기별(전기,후기) 졸업 현황
 - 5. 학기별 학사경고 현황
 - 6. 월별 자퇴 현황
 - 7. 월별 휴학 현황
 - 8.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자료
 - ④ 학적관련 현황을 보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한다.
 - 1. 모집단위(전공) 구분
 - 2. 정원내외 구분
 - 3. 학년 구분
 - 4. 전년대비 구분
 - 5.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구분 값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